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방과후과정 운영의 근거 마련 등 〉
■ 문정복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267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 상 열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방과후과정의 운영 근거 규정 마련	2
2. 방과후과정 강사 법적근거 마련 및 결격사유	10
3. 방과후과정 강사 역량검증 및 즉시 배제 사유 마련	18
4. 개정안 부칙	2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정복 의원 등 15인

2. 발 의 일 : 2025. 11. 14.

3. 회 부 일 : 2025. 11.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방과후과정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임.

이로 인해, 최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부 단체가 방과후과정에 침투를 시도한 ‘리박스쿨 사태’ 등에 대응하여 방과후학교 강사의 검증·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여도,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방과후과정 지원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방과후학교 강사의 결격사유와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 학교의 장의 방과후학교 강사 검증 업무에 대한 교육감의 지원 의무도 규정하여, 방과후과정에 대한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하고, 방과후과정의 질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방과후과정의 운영 근거 규정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방과후과정의 운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23조의3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3(방과후과정) ① 학교의 장은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이하 “방과후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나. 검토의견

-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내부 교원 또는 외부 강사가 운영하는 추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학생 및 학부모가 희망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유·무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과정’이 운영되고 있음¹⁾.
-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내에 정규수업 이후 학생들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인력을 마련하여 희망하는 학생이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 제도도 병행하여 운영 중인데²⁾, 2024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및 2학년을 대상으로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늘봄학교’로 통합하여 운영 중이고, 교육부는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2026.2.)”을 마련하여 2026년도부터는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도 지원하려고 계획함.

[늘봄학교 참여 현황]

기준일	초1			초2			초1·2 합계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25.3.28	325,290	274,387	84.4%	353,215	277,195	78.5%	678,505	551,582	81.3%

자료: 교육부 제공

1) 통상 방과후학교를 통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방과후과정이라고 지칭함.

2) 방과후학교는 1995년, 초등돌봄 교실은 2004년 도입되었음.

[방과후학교 참여 현황]

기준일	초3			초4			초5			초6		
'24430.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427,166	229,075	53.6%	422,581	201,866	47.8%	423,389	170,336	40.2%	467,772	155,432	33.1%

자료: 교육부 제공

기준일	중			고		
'24430.	전체	참여	참여율	전체	참여	참여율
	1,332,850	272,539	20.4%	1,304,325	379,042	29.1%

자료: 교육부 제공

□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경우 전체 학생 중 늘봄학교 참여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20% 이상, 고등학생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30% 가까이 나타났는바, 공교육 중에서 선택사항인 방과후학교에 대하여 학생들의 참여율이 적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33.1%, 5학년의 경우 40.2%, 4학년의 경우 47.8%, 3학년의 경우 53.6%, 2학년의 경우 78.5%, 1학년의 경우 84.4%로 저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여 운영 중인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음³⁾.

□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재 방과후과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

3)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늘봄학교 참여율을 말하며, 통계기준일이 방과후학교와 늘봄학교의 경우 다름.

행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규학
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을 포함시
키고 있고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
한 특례로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 및 방과후교육
활성화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⁵⁾⁶⁾,

방과후과정 운영이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의 범위 내에 포함된
다고 해석하더라도, 방과후과정의 운영 방향성이나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의 경우 특별교부금의 교부대상과 교부금 비율을 규
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인 것으로 보임⁷⁾.

- 4)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다만,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
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라 교부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
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 6)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지방재정교부금(보통)으로 방과후과정이 지원되고 있
는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별표 2] ‘기준재정수요액의 추정항목·추정단위·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에서 추정항목 중 ‘7.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
음.

- 7) 그 밖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교육위원장이 정하는 「초·중등학
교 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고시 제2024-3호)」에서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시 원칙으로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서 의미하는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편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운영하
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정하
는 고시에서 방과후과정과 관련한 내용을 정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개정안은 ① 방과후과정 운영의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하고(제1항),
- ② 국가(교육부장관)가 제도의 틀(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지자체(교육감)는 세부사항(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하고(제2항),
- ③ 국가(교육부장관)가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며 지자체(교육감)의 실행계획(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수립)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안은 방과후과정의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방과후과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이를 통해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한 검증·관리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방과후과정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과후강사의 검증·관리를 강화하면서 관련된 학교의 업무 부담도 경감하려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현장에서는 교원단체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으나, 방과후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II. 학교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1. 설계의 원칙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며, 학생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5)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방과 후 활동 또는 방학 중 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

8) 또한 교육부는 이를 위해 별도의 방과후학교 근거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임.

□ 다만, 교육위원회에는 방과후과정 운영 근거 규정 마련과 관련한 개정안⁹⁾이 계류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비교]

김문수의원안	문정복의원안
제23조의3(방과후과정) ① 학교의 장은 정규학습시간 전후 또는 휴업일 중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초등학교의 경우 돌봄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방과후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운영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방	제23조의3(방과후과정) ① 학교의 장은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하여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이하 “방과후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방과후과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라 지역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9) 의안번호 11433

과후과정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시·도교육청>

- **(대구교육청(일부 수정))**
 - 제23조의3(삭제): 방과후과정 운영은 학교의 자율 사항이므로 조문 신설 반대
 - 제23조의4(일부 수정): ①강사에게 「교육공무원법」상 결격사유 적용은 과도하므로 제2항제1호 삭제 ②강사 결격사유는 학교에서 조회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제3항 단서 삭제
- **(대전교육청(반대))** 학교의 자율 사항인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은 과잉 입법, 방과후과정은 돌봄 정책이므로 복지부 소관 별도 제정법 필요
- **(세종교육청(반대))** ①방과후과정은 학교 자율 활동이므로 조문 신설 반대 ② 교육부장관이 ‘기본 사항’과 ‘연간 운영지원계획’ 수립하면 지역 맞춤형 운영모델 개발 제약할 우려
- **(경기교육청(일부 수정))**
 - 제23조의3(일부 수정): 방과후과정의 운영 여부를 학교장이 결정한다는 문구 추가
 - 제24조의4(일부 수정): 강사 채용, 계약, 해지 관련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 대책 마련 및 교육의 중립성 위반 판단 기준 구체화 필요
- **(충남교육청(이견 없음))**

<초등학교>

- **(인천 소재 2교(반대))** 학교의 의무 사항이 많아져 교직원의 책임과 업무 부담 증대 우려
- **(광주 소재 28교(반대))** ①방과후 강사 역량 검증을 법률로 규정하면 준교원 지위 요구 우려(외부 강사 관리 규정’ 별도 마련 필요) ②방과후 강사 검증, 계약해지 등 의무가 학교·학교장에게 집중 우려
- **(충남 소재 50교(반대 / 일부 수정))**
 - 반대: ①방과후과정 위상이 과도하게 강화되어 정규교육과정 운영에 영향 미

칠 우려^②방과후 강사 검증, 계약해지 등 의무가 학교·학교장에게 집중 우려

- 일부 수정(1교): 제23조의3의 ^①방과후과정 → 방과후활동 ^②정규수업 → 학교교육과정으로 수정

○ **(경남 소재 6교(반대 / 일부 수정))**

- 반대: 방과후과정을 법률로 규정할 경우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우려
- 일부 수정(1교): 국가 표준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각 종목별 인원 및 프로그램 운영 포함)을 교육부가 개발 보급 필요

<관련 단체>

- **(대구교사노조(반대))** 학교의 자율 사항인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은 과잉 입법, 방과후과정은 돌봄 정책이므로 복지부 소관 별도 제정법 필요
- **(전교조 경남지부(반대))** 방과후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교원의 업무·책임 과중 등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입법 부적절

2. 방과후과정 강사 법적근거 마련 및 결격사유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방과후과정 강사를 둘 수 있게 하고, 강사 임용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4(방과후과정 강사) ① 학교의 장은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방과후과정 강사(이하 이 조에서 “강사”라 한다)를 두어 학생의 교육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사유 및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로 인한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기간 중에 있는 자 3.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학

	교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자
--	-----------------------------

나. 검토의견

1) 방과후과정 강사의 법적근거 마련

- 현재 방과후과정은 교원(약 4%)과 외부강사(약 96%)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재 방과후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위 및 역할 수행의 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방과후과정 강사 현황]

구분	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 교육			합계		
	외부강사	교원	소계	외부강사	교원	소계	외부강사	교원	계
강사 수	37,941	3,485	41,426	77,394	1,475	78,869	115,335	4,960	120,295
비중	91.6%	8.4%	100.0%	98.1%	1.9%	100.0%	95.9%	4.1%	100.0%

자료 : 교육부('25.4.30. 기준)

2) 방과후과정 강사 결격사유

가)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채용제한사유 및 교육공무원 임용결격사유

-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상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의 채용제한사유 및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방과후과정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 「교육공무원법」은 교원 등¹⁰⁾으로 재직하는 동안 ① 금품 수수(授受)

행위, ②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③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1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

10)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동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을 포함),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

1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④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교육공무원법」 상 교원의 채용제한사유 및 교육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2. 1. 26.>

2. 금품 수수(授受)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
·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 등¹²⁾을 임용하는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의 채용제한사유 및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등)를¹³⁾,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5항¹⁴⁾(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유아교육법」에서도 유치원에서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교원외에 강사 등¹⁵⁾을 임용할 수 있게 하면서,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5항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¹⁶⁾

12)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3)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1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15)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

□ 이와 같이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등’과 「유아교육법」상 ‘강사등’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의 채용제한사유 및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등이 적용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바¹⁷⁾, “방과후과정”의 “외부강사”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안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의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이 동시에 선고되는데¹⁸⁾, 개정안은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기간 중

16)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의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17) 그밖에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동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 4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1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

에 있는 경우 방과후과정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 현재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기간 동안은 방과후과정 강사가 될 수 없는데, 개정안은 이와 같은 내용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교육위원회에는 방과후과정의 강사의 결격사유와 관련한 개정안¹⁹⁾이 계류되어 있는바, 함께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비교]

김문수의원안	문정복의원안
제23조의4(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 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 및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과후과정의 외부강사 및 위촉직 봉사자(이하 “외부강사등”이라 한다)가 될 수 없다.	제23조의4(방과후과정 강사)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강사가 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제한사유 및 같은 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9) 의안번호 13647

	<u>다른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로 인한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기간 중에 있는 자</u> <u>3.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자</u>
--	---

3. 방과후과정 강사 역량검증 및 즉시 배제 사유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학교의 장은 방과후과정 강사가 되려는 자의 역량 등을 검증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교육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강사의 방과후과정 사후 배제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4(방과후과정 강사) ③ 학교의 장은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강사가 소속된 기관·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강사가 되려는 자의 역량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등 조회.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등 조회 절차를 준용한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강사의 아동학대관

	<u>련범죄 전력 확인</u>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른 <u>강사의 성범죄 경력의 확인</u> ④ <u>학교의 장은 강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강사를 즉시 방과후과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u> 1. <u>강사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u> 2. <u>강사가 방과후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강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⑤ <u>그 밖에 강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1) 방과후과정 강사 역량 검증 및 결격사유 조희

- ☐ 현재 각 학교에서는 방과후과정 강사 자격, 선정 방법, 심사 기준을 포함하여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별로 외부평가 위원회 포함된 강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방과후과정 강사 선정 시 검증을 실시 중으로, 강사 평가위원회에

서는 면접 절차 등을 거쳐 개별 강사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능력 등을 최종 확인하고 계약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²⁰⁾.

- 교육부는 방과후과정 강사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감 지원 사항은 현재 없으나, 강사 수급이 어려운 일부 지역(농·산·어촌 등)에서는 교육(지원)청이 직접 강사 위수탁 절차(공고·계약 등)를 진행하여 학교에 연계하여 강사 확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 이를 종합하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방과후강사 선정은 각 학교에서 수립한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외부 평가 위원회 포함된 각 학교의 강사 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방과후과정 강사의 검증·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방과후과정에서 교육의 중립성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 학교장에게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한 역량 검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한 교육감의 지원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이와 같이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방과후과정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 경력의 조회는 학교장이 요청

20) 교육부 설명자료 참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¹⁾, 개정안은 조회 업무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학교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방과후과정 강사의 즉시 배제 사유

- 현재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한 계약 해지는 단위 학교의 방과후 강사 위수탁 계약서에 사유를 반영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²²⁾.
- 개정안은 방과후과정 강사가 ① 「교육공무원법」 상 교원의 채용제한사유 및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등에 해당하거나, ②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범죄로 인한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및 ③ 방과후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²³⁾에 따른 교육

21)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22) 교육부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개발한 「초등돌봄·교육 운영 길라잡이」는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한 ‘학교장에 의한 계약 해지’ 사유를 정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학교는 이를 방과후 강사 위수탁 계약서에 반영하여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강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은 즉시 해당 강사를 방과후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즉시 배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한편, 현재 「초·중등교육법」 상 ‘산학겸임교사등’과 「유아교육법」 상 ‘강사등’의 경우 ‘즉시 배제’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바,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준법의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가) 「교육공무원법」 상 교원의 채용제한사유 및 교육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등

□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동법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원의 채

유형	절차 및 효력 발생	해당 사유
즉시 해지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①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②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학교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서면 보고
절차 해지	절차 진행(해지 30 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 → 강사 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①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②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③ 프로그램 운영 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었을 때 ④ 기타 강사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 학교장은 강사와 합의하여 해지 사유 통지 전에 프로그램 운영을 중지시킬 수 있음

자료 : 교육부

- 23)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용제한사유를 규정한 동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의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²⁴⁾, 동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 보다 방과후과정 강사에 대한 권리 제한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임.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명령

-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인한 법원의 취업제한명령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방과후과정 강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경우 배제 사유로 하려는 것인데, 아동학대관련범죄 또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당연 배제 사유로 하는 것이 보다 입법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보임.

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

-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제6조²⁵⁾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강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배제 사유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의 경우 ‘교육의 중립성 위반’ 및 ‘강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24)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당연퇴직) ① 교육공무원이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5)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곤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방과후과정 강사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이에 대한 절차 등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입법례 - 「국가공무원법」]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③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3.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또한, 교육위원회에는 방과후과정 강사의 결격사유 확인 조회와 사후배제 등과 관련한 개정안²⁶⁾이 계류되어 있는바, 이와 함께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 비교]

김문수의원안	문정복의원안
<u>제23조의4(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u> ② <u>외부강사등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각 호 및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촉된다.</u> ③ <u>외부강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등 조회는 제3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장”은 “교육장”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외부강사등”으로,</u>	<u>제23조의4(방과후과정 강사) ③ 학교의 장은 강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강사가 소속된 기관·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강사가 되려는 자의 역량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

26) 의안번호 13647

“제31조의2”는 “제23조의4”로, “퇴직”은 “계약 해지나 해촉”으로 본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등 조회. 이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 등 조회 절차를 준용한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강사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확인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른 강사의 성범죄 경력의 확인 ④ 학교의 장은 강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강사를 즉시 방과후과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강사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강사가 방과후과정에서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강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4.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안 부칙은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개정안은 방과후과정 강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바, 대통령령의 정비를 위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사례가 많으므로²⁷⁾, 개정안의 부칙과 같이 법률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86

27)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법제실, p 821